

* 제 45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백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03월 24일(금)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4층 중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동준)

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박형준)

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용준)

3-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조광남)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장영학)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별첨 : 안건세부사항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3월 18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하는 제이준 주식회사의 제45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03월 14일 ~ 2017년 03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2017년 03월 일

제이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범규, 이진형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 별첨

정관변경안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u>양주시</u> 에 둔다. ② 생략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u>인천광역시</u> 에 둔다. ② 생략	-
제4조(공고 발행)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wooholdings.co.kr)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고 발행)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ayjun.kr)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	-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신설>	제 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 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100,000,000주의 범위 내에 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 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백 오십만주 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 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 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 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 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 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 배당 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 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 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 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 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 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배당우선주식) ①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 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 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 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 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다. ⑥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 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 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전	개정후	비고
<신설>	<p><u>제8조의3 (전환주식)</u></p> <p>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p> <p>③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p>	-
<신설>	<p><u>제8조의4 (상환주식)</u></p> <p>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p> <p>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 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⑦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⑧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p>	-

개정전	개정후	비고
<신설>	<p>제8조의5 (의결권배제주식)</p> <p>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결의로 보통주식과 <u>우선주식</u> 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결의로 보통주식과 <u>종류주식</u> 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과 <u>우선주식</u> 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과 <u>종류주식</u> 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제 45 조 (이익배당) ① ~ ④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u>우선주식</u> 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5 조 (이익배당) ① ~ ④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u>종류주식</u> 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부칙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시행한다. -----.	부칙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시행한다. -----.	-

이사후보자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신규선임 여부	회사와의 거래내역	국적
사내이사	이동준	66.01.20	3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휴학 HSGF(주) 대표이사 제이준(주) 부사장	이사회	신규선임	-	대한민국
사내이사	박형준	74.01.03	3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제이준 성형외과 원장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이사회	신규선임	-	대한민국
사외이사	이용준	59.09.05	3년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SK Telesys 부장	이사회	신규선임	-	대한민국
사외이사	조광남	67.04.29	3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두하우 컨설팅(주) 대표이사	이사회	신규선임	-	대한민국

감사후보자 내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신규선임 여부	회사와의 거래내역	국적
상근감사	장영학	56.12.12	3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주)대흥전자 대표이사	이사회	신규선임	-	대한민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1. 주식매수선택권의 종류 : 제이준(주) 보통주

2. 부여대상자명 :

성명	직위	부서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주)
이동춘	부사장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193,216
고재영	부사장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176,816
이홍관	이사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47,920
김대진	이사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29,536
남승종	이사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23,408
권용준	이사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83,584
박진영	이사	임원	기명식보통주식수	23,408
김경미	부장	감사	기명식보통주식수	29,904
조용운	부장	유통사업본부	기명식보통주식수	23,776
박연홍	부장	제조생산본부	기명식보통주식수	33,776
김용덕	부장	재무팀	기명식보통주식수	17,648
한규환	부장	신사업팀	기명식보통주식수	29,904
우영민	차장	포장팀	기명식보통주식수	28,016
최휴진	차장	경영지원팀	기명식보통주식수	21,888
김웅민	차장	생산팀	기명식보통주식수	21,888
김준형	부장	법무팀	기명식보통주식수	29,904
조양래	부장	구매팀	기명식보통주식수	17,648
합 계				832,240

3. 행사조건

- 행사기간 :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가능 (단,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행사 가능)

4. 산정방법 :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가액(주식의 실질가액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5. 행사가격 : 6,900원

6. 부여방법: 추후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 방식, 차액보상 방식 중 이사회에서 결정

7. 부여일자 : 2017년 3월 03일

8. 행사가격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음.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이 사	감 사
전기한도 승인액	1,500,000	200,000
당기한도 승인액	10,000,000	500,000